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0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민선지방자치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주민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위원회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추천 등 공개절차에 따름
 -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주민참여 보장
 -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 위원장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례화하도록 규정함
- 라. 회의자료 등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 마.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받아 군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

바.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주민은 군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함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함
- 군수는 토론 결과 검토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 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사.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견 조사 후 1개월 내에 조사 결과 및 견해를 표명토록 함
- 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8. 12. 12. ~ 12. 31.) 결과 : 별첨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및 검토 내용

○ 제출단체 : 함께하는 거창(공동대표 신용규, 이성호)

○ 제출의견

구분	제출의견	검토의견	반영 여부
제1조 (목적)	 ○ 문구 수정 - 1)"확보" ⇒ "증대" ○ 문구 삽입 - 2)"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를 살려" 	○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 1)의 "양이나 규모를 넓힌다"는 「증대」보다는 "갖춤"의 뜻을 가지는 「확보」가 적절 - 2)는 선언적 의미	미반영
제2조 (기본이념)	 ○ 문구 수정(2항) - "조례에도" ⇒ " 조례·규칙의 제· 개정과 운용, 해석에 반영되도록 	○ 다른 법규에도 반영한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미반영
제4조 (군수의 책무)	○ 문구 수정(1항) -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원활한 주민참여를 위해 참여의 어려움을 개 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실 시하여야 한다."	○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 반영을 삽입 -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반 영
	문구 삽입(2항)"이행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 개선사항 평가 및 공개는 필요시 향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세부내용으로 규정	미반영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 문구 삽입 -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 선언적 의미	미반영

구분	제출의견	검토의견	반영 여부
[신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조항 삽입 -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예산담당에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계획임.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미반영
제6조 (위원회에의 주민참여)	 ○ 문구 수정(1항) -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 ⇒ "근거 법령 등" - "공개적 절차에 따른다" ⇒ "공개적 절차에 의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타 조례 규정 사항 미고려 ○ 선언적 의미	미반영
	 ○ 문구 수정·삽입(2항) - "여성과 장애인 등' ⇒ "여성, 장애인, 노인 등" -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주민참여가 일정비율 이상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수가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 사회적 약자를 의미 ○ 필요시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 ○ 타 조례 규정 사항	반영 미반영 미반영
	- 법당 및 다른 소데에서 ⇒ 법령 등" ○ 문구 삽입(3항) - 동일인의 위원회 참여제한	미고려 ○ 우리군 위원회 정비계획과 동일(수정) ⇒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반영
	○ 문구 삽입(3항) - 위원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노력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개최 위원회가 다수 존재	미반영

구분	제출의견	검토의견	반영 여부
제7조 (회의자료 등 공개)	 ○ 문구 수정(1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 "법령 등" - "적극 공개" ⇒ "모두 공개" ○ 문구 삭제(1항) -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타 조례 규정 사항 미고려 ○ 삭제	미반영 반영
	○ 문구 수정(2항)- "회의자료 등을 공개"⇒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 1항에 이미 규정, 중복	미반영
제8조 (주민제안)	 ○ 문구 수정 - "공모' ⇒ "상시 공모" - "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및 예산" -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속히 주민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 일부 수정반영 반영 수정 ⇒ 계획 수립과 예산 및 수정 ⇒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 하여야 한다. 	반영
제9조 (정책토론 청구)	 ○ 청구연서 인원수 검토 -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20명 이상의 주민 연서 ⇒ 50명 이상 	○ 주민 100명 이상,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 이상으로 협의 조정	협의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거창군민을 말한다.
 - 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 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받아 군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토론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10조(주민의견 조사) ①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개월 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 제15조 (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

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신설 2006.10.4>

참고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있다.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2. <u>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u>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 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주민투표법 제15조

제5조(주민투표권)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②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③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u>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u>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 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 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u>시·군 및 자치구는</u>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책토론 청구연서인원 검토[참고자료]

○ 유사법령 검토

구 분	근거법령	대 상	청구인원수	우리군 적용사례
주민소환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7조	전년말 기준 19세 이상	15/100이상	자치단체장 : 7,635명※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
주민투표 청 구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2항	전년말 기준 20세 이상	1/5 ~ 1/20	<거창군주민투표조례> ○ 청구 인원수를 1/10으로 규정 ⇒ 50,116명/10 = <u>5,012명</u>
주민조례 개폐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전년말 기준 19세 이상	1/50 ~ 1/20	<거창군주민조례개폐청구조례> ○ 청구 인원수를 1/50으로 규정 ⇒ 50,898명/50 = <u>1,018명</u>
주 민 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	19세 이상	200명이내	<거창군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청구 인원수 : <u>20세 이상, 200명</u> <u>이상</u>

O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1/00 이상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 (19세이상, 선거권 있는 주민)	300인 이상 (19세 이상 주민)	3/1000 이상 (선거권 있는 주민)
○ 적용시군	○적용시군	○적용시군	○적용시군
- 영광군(청구일 현재	- 함평군 (청구일 현재	- 대전광역시	- 제 주특별 자치도
19세 이상의 주민)	19세 이상의 시민),	(청구일 현재	(也形)。
⇒ 500명 정도	- 창원시, 익산시,	19세 이상의	
※ 제한규정	안산시, 시흥시,	시민)	
- 최소 5개 8면 이상 1	(선거권있는 주민),		
<u>읍면 50인 이상 연</u>	- 순천시, 청주시(미규정)		
<u>서함을 규정</u>	※ 제한규정		
	- 함평군은 최소 5개		
	<u>읍면 이상, 1읍면 20인</u>		
	이상의 연서함을 규정		